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91
----------	-----

2023. 6. 12.(월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6월 12일

-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채홍경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도정혁신과 더 살기 좋은 충북프로젝트 조기 실현을 위한 정원 조정내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<정원 조정사항>

-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 3)

- 일반직: 1,698명(+3명)
  - ▶ 4급 이상 (+1명), 5급 이하 (+2명)
- 연구직: 197명(△2명)
  - ▶ 연구관 (△1명), 연구사 (△1명)
- 지도직: 30명(△1명)
  - ▶ 지도사 (△1명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정혁신과 더 살기 좋은 충북프로젝트 조기 실현을 위한 정원 조정내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  -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4급 이상 1명, 5급 이하 1명을 증원하고
  - 연구관, 연구사, 지도직을 각 1명씩 감원하는 것임.
- 이번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업무와 장애인복지 업무를 구분하여 4급 1명을 증원하였음.
  - 현재 17개 시도 중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업무가 단일 부서에 수행되고 있는 곳은 세종시와 충청북도 두 곳 뿐이라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업무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업무와 장애인 복지업무를 분과하는 것은 필요함.

- 다만, 분과에 따른 정원의 증원이 수반되어야 하나 정부 방침에 따라 정원 증원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부족한 현실임.
- 따라서 향후 정원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, 업무확대 및 분과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부서에 우선적으로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음.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출장소	합의제 행정기관
<b>총 계</b>	<b>4,828</b>	-					
<b>정무직 계</b>	<b>3</b>	1					2
도지사	1	1					
위원장	1						1
상임위원	1						1
<b>일반직 계</b>	<b>1,698</b>	-					
1~2급	1					1	
2~3급	2	1	1				
3급	12	10		1		1	
3~4급	2	2					
4급	79	53	8	5	7	5	1
5급이하 소계	1,586	-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6	-					
<b>별정직 계</b>	<b>12</b>	-					
1급 상당	1	1					
4급 상당	3	3	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8	-					
<b>연구직 계</b>	<b>197</b>	-					
연구관	31			31			
연구사	166	-					
<b>지도직 계</b>	<b>30</b>	-					
지도관	6			6			
지도사	24	-					
<b>소방직 계</b>	<b>2,845</b>	-					
소방정	18	5		13			
소방령이하	2,827	-					
<b>교육공무원 계</b>	<b>43</b>	-					
총장	1			1			
교수.부교수. 조교수.전임강사	31			31			
조교	11	-					

※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

## 관련 법령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### 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도정혁신과 더 살기 좋은 충북프로젝트 조기 실현을 위한 정원 조정내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 변동이 없어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### ○ 작성자

행정국 행정운영과장 서동경